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70
----------	-------

발의연월일 : 2025. 12. 22.

발 의 자 : 임호선 · 윤준병 · 안도걸
문대림 · 이원택 · 박수현
어기구 · 이재관 · 김주영
정준호 · 강준현 · 복기왕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으나, 경찰대학에서 해당 악성 앱을 감지해 내는 앱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악성 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앱은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등록해야 하는 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초기화면에 등록되어 시장에 출시되도록 한다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

콘텐츠의 등록을 포함함)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7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조치) ①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7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조치) 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모바일콘텐츠 등의 등록을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u> <u>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